

우리사주제도의 이해



우리사주지원센터
Center for Employee Stock Ownership

목 차



I.	우리사주제도 개요	3
II.	우리사주조합	6
III.	우리사주 취득	10
IV.	우리사주 관리	24
V.	의결권 행사	26
VI.	조합 해산	28
VII.	세제지원	29



I. 우리사주제도 개요 - 선순환 구조



I. 우리사주제도 개요 - 의의



□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 및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

우리사주의 요건

-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것일 것
 - 조합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합원인 근로자 만이 우리사주 취득 가능
- ❖ 소속회사의 주식일 것
 -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소속회사 채권 등 취득 불가
- ❖ 전담관리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을 것
 - 한국증권금융에서 인출된 이후부터는 우리사주가 아님



I. 우리사주제도 개요- 체계



구 분	근로자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적 지위	기본법	특별법
적용 대상	모든 주식회사 및 그 조합, 조합원	상장(예정)법인 및 그 조합, 조합원
담당 부처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 업무	- 제도 관련 정책수립, 제도개선 - 각종 신고, 보고 사항 접수 - 조합운영상황 관리, 감독	- 주권상장(예정)법인 우선배정 관련 사항 규율
전담관리기관 [한국증권금융]	- 우리사주의 수탁, 보관, 관리 - 우리사주제도 교육 및 홍보 - 우리사주조합 운영 상담, 컨설팅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 금융기관 - 우리사주조합기금 예치 금융기관



Ⅱ. 우리사주조합 - 설립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이 선행되어야 함

❖ 우리사주조합

- 근로자가 자사주를 취득,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 (권리능력 없는 사단)

❖ 조합 설립 절차

- 주식회사의 근로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①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② 창립총회 개최(규약채택, 임원선출) → ③ 우리사주관리위탁계약 체결 (한국증권금융) → ④ 노동부 신고



Ⅱ. 우리사주조합 - 조합원 자격



□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자유롭게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음

❖ 조합원 자격

- 조합이 설립된 회사 및 관계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음
 - ※ 관계회사 : 지배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을 소유하여 지배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

- ① 주총에서 선임된 임원(등기임원) ② 소액주주 아닌 주주 ③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 ④ 증권거래법에 의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혈연관계가 있는 자)

❖ 조합 가입 및 탈퇴

- 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음
-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① 관계회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② 지배회사 조합의 동의 ③ 관계회사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당해 조합 해산 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Ⅱ. 우리사주조합 - 기관



□ 필수기관(총회, 이사회, 조합장, 감사)과 임의기관(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음

- ❖ 조합원 총회 :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
- ❖ 대 의 원 회 : 조합원 총회의 대체기관
- ❖ 이 사 회 : 조합 업무의 집행기관
- ❖ 조 합 장 : 이사회의 의장, 조합 업무 집행을 총괄, 대외적으로 조합 대표
- ❖ 감 사 : 이사회의 조합 업무 집행을 감시, 감독
- ❖ 운영 위원회 : 회사의 조합에 대한 지원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 회사와 조합 동수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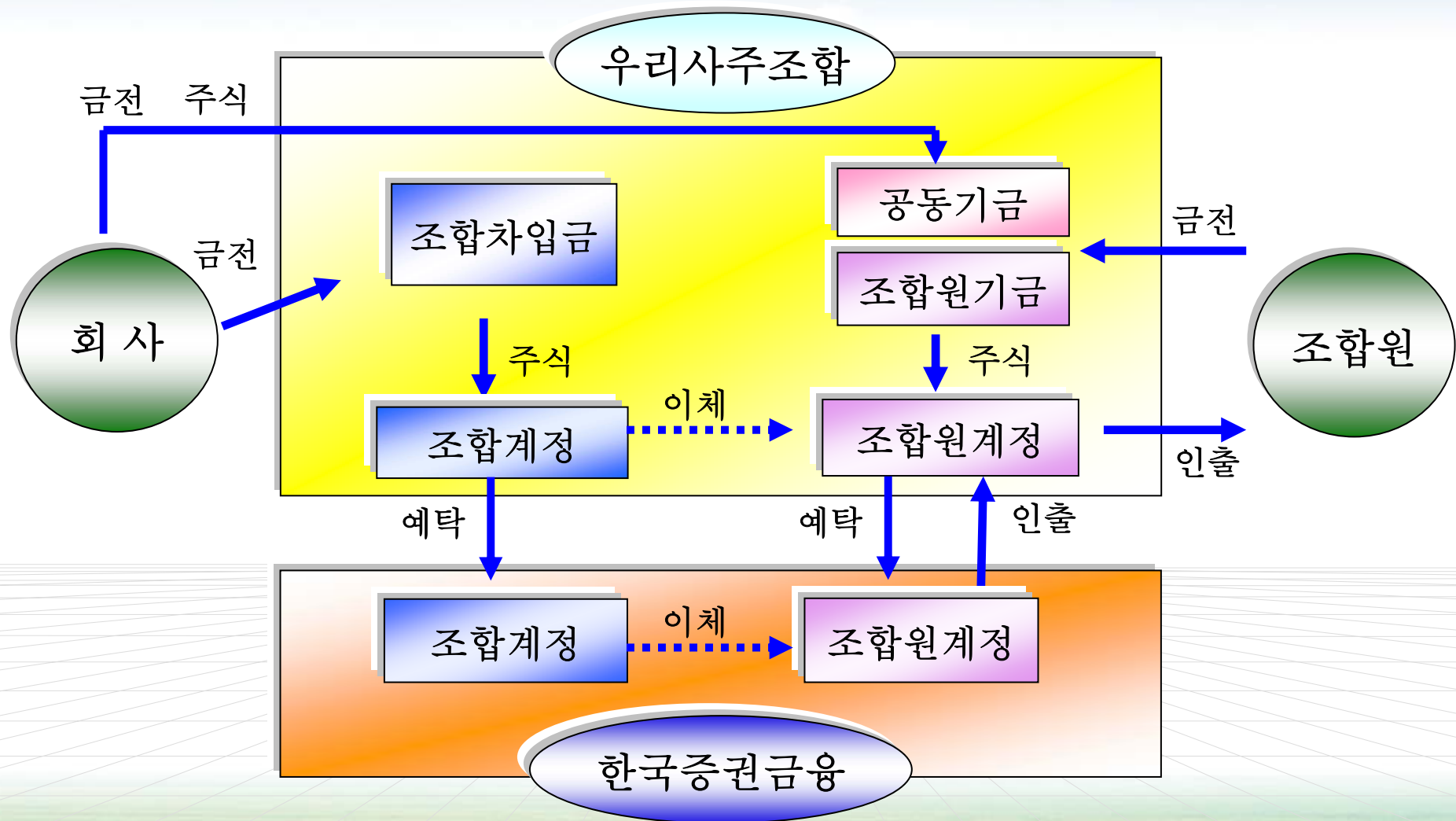
Ⅱ. 우리사주조합 - 운영상의 의무



	의무발생시기	신 고 처	신고시기
조합원 총회 개최	회계연도 종료	-	3개월
운영상황 보고	회계연도 종료	노동부	3개월
주소이전 신고	주소 이전	노동부, 증권금융	즉시
조합장(대표이사) 변경 신고	조합장(대표이사) 변경	증권금융	즉시
규약 변경 신고	규약 변경	증권금융	즉시
인감 분실(변경) 신고	인감 분실(변경)	증권금융	즉시



Ⅲ. 우리사주 취득 - 업무 흐름도



Ⅲ. 우리사주 취득 - 개요



재원	취득방법	배정방법	예탁기간	비 고
조합원 출연	우선배정	조합원계정	1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공통	대응출연		- 조합원출연 : 1년 - 조합원外출연 : 4~8년	
	시장매입			
	회사, 대주주 지분 매수			
조합원外 출연	자사주 무상출연		4~8년	출연자와 협의하여 예탁 기간 설정
	현금무상출연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조합계정→조합원계정 (차입금 상환시)	1년 (조합원계정)	



Ⅲ. 우리사주 취득 - 조합기금



□ 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 조합차입금 및 이자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음

기금의 조성

- ① 회사, 대주주 등의 출연 금품
- ② 조합원의 출연금
- ③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조합차입)
- ④ 배당금, 기타 수입금

기금의 관리

- ❖ 조합기금은 한국증권금융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 ❖ 직전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예) 12월 결산법인의 조합이 2009년 1월 5일 무상출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 경우
→ 2010년 6월말까지 적립된 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함



Ⅲ. 우리사주 취득 - 우선배정



□ 회사가 모집, 매출 또는 유상 증자하는 경우 당해 모집, 매출, 유상증자 주식의 20%를 기존 주주 보다 우선적으로 배정받아 취득하는 방법

주권상장(예정)법인

- ❖ 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의 20%를 우선배정 받을 권리가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 연봉을 초과하거나 누적 취득액 1%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

코스닥 및 비상장법인

- ❖ 회사는 모집, 매출 또는 유상증자 하는 주식의 20%를 조합원에게 우선배정 할 수 있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Ⅲ. 우리사주 취득 - 우리사주매수선택권1



□ 제공기간 이내에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	전체 조합원	특정 임직원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한 자)
행사 가격	부여시 시가의 80% 이상	부여시 시가 이상
제공 기간 (대기 기간)	최소 6개월~최대 2년 (다수 매수 허용)	최소 2년
주식교부방법	①신주발행 ② 회사보유 자기주식 교부	①신주발행 ②회사보유 자기주식 교부 ③차액 보상
의무 예탁	1년간 의무예탁	없음



Ⅲ. 우리사주 취득 - 우리사주매수선택권2



① 정관변경



② 부여결의



③ 권리행사



④ 의무예탁

①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정관에 규정

②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③ 제공기간 경과 후 행사시의 시가와 행사가격을 고려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④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간 의무예탁



Ⅲ. 우리사주 취득 - 우리사주매수선택권3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회사는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함

절대적 기재사항

- ❖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 또는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요건

임의적 기재사항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권리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 ❖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Ⅲ. 우리사주 취득 - 우리사주매수선택권4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부여할 수 있음

결의방법 및 한도

- ❖ 주주총회 결의 : 발행주식총수의 20%까지 부여 가능
- ❖ 이 사 회 결의 :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부여 가능

결의할 사항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 신주발행 or 자기주식 교부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Ⅲ. 우리사주 취득 - 우리사주매수선택권5



기타 주의 사항

- ❖ 조합원 **개인별 부여 한도**는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제공기간이 2년일 경우. 조합원은 최대 1,200만원까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
- ❖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평가가격의 80%이상**
→ 상 장 법 인 : 기준일 전 1개월, 1주 종가평균 및 기준일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
→ 비상장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시가
-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권리는 소멸** (단, 사망의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
- ❖ 회사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대응할 목적으로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가능



Ⅲ. 우리사주 취득 - 우리사주매수선택권5



Ⅲ. 우리사주 취득 - 차입형 우리사주제도1



□ 회사 또는 대주주 등이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조합이 자금을 차입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

- ❖ 조합원이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아니라 조합원 개인 차입이므로 주의

준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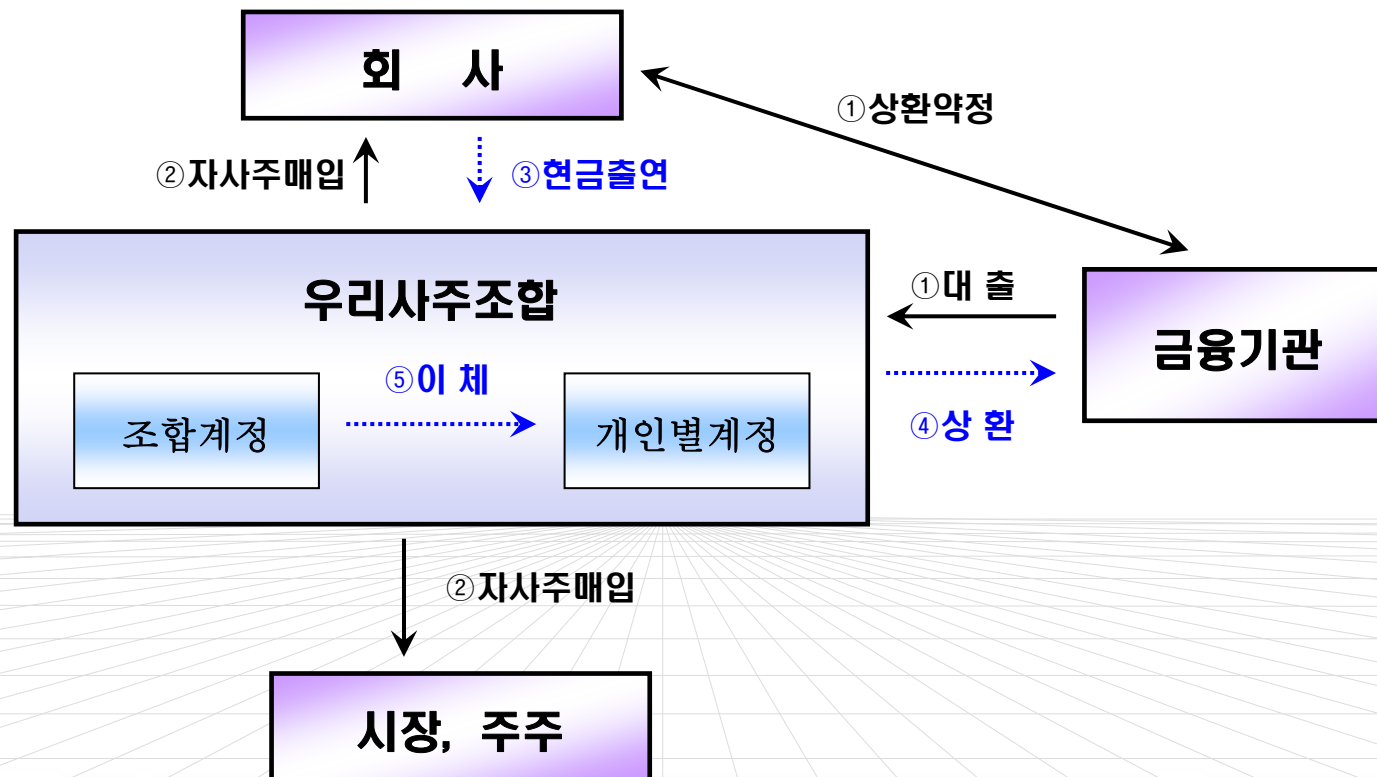
- ❖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시행에 관하여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
- ❖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조합이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함
- ❖ 차입금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조합원 급여총액 이내일 것
- ❖ 차입기간은 3~7년 이내일 것
- ❖ 차입금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이상을 상환할 것



Ⅲ. 우리사주 취득 - 차입형 우리사주제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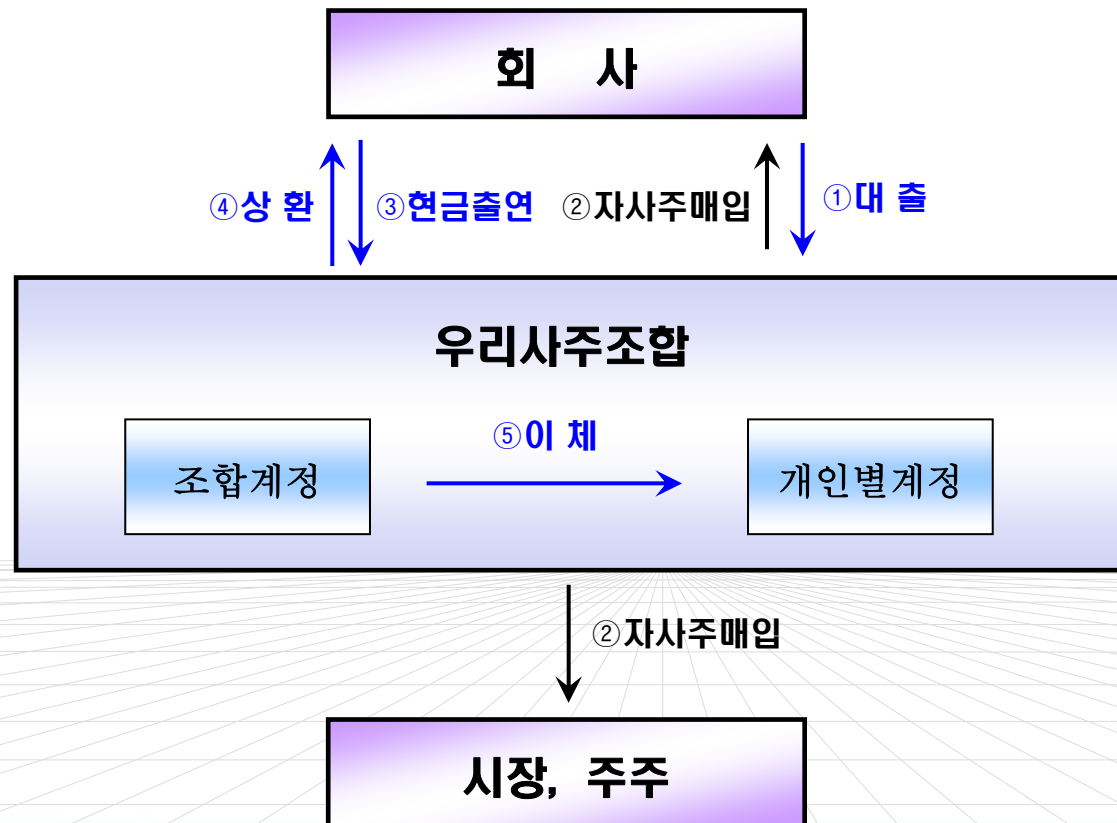
□ 금융기관 차입형



Ⅲ. 우리사주 취득 - 차입형 우리사주제도3



□ 회사 차입형



Ⅲ. 우리사주 취득 - 금융지원



□ 한국증권금융은 우리사주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 ❖ 대출 대상 : 조합원
- ❖ 대출 한도 : 1억원
- ❖ 대출 기간 : 5년
- ❖ 대출 이자 : 연 8.5% 이내
(담보 및 소속회사 신용에 따라 차등적용)

우리사주취득자금대출

- ❖ 대출 대상 : 우리사주를 예탁중인 조합원
- ❖ 대출 한도 : 3억원
(단, 의무예탁 중인 경우에는 5천만원)
- ❖ 대출 기간 : 1년
- ❖ 대출 이자 : 연 8.5% 이내
(담보 및 소속회사 신용에 따라 차등적용)



IV. 우리사주 관리 - 예탁



□ 조합은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야 함

예탁방법

- ❖ 상 장 법 인 → 계좌대체 및 실물 예탁
- ❖ 비상장법인 → 실물 예탁

예탁기간

- ❖ 조 합 원 출 연 → 1년
- ❖ 조 합 원 外 출 연 → 4~8년 기간 중 출연자와 협의한 기간
- ❖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 차입금 상환 후 1년



IV. 우리사주 관리 - 인출



만기인출

-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조합원은 자유롭게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특별인출

- ❖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여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① 조합의 해산
- ② 조합원의 사망
- ③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발생
- ④ 정년 도달
- ⑤ 근로기준법 24조에 의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⑥ 위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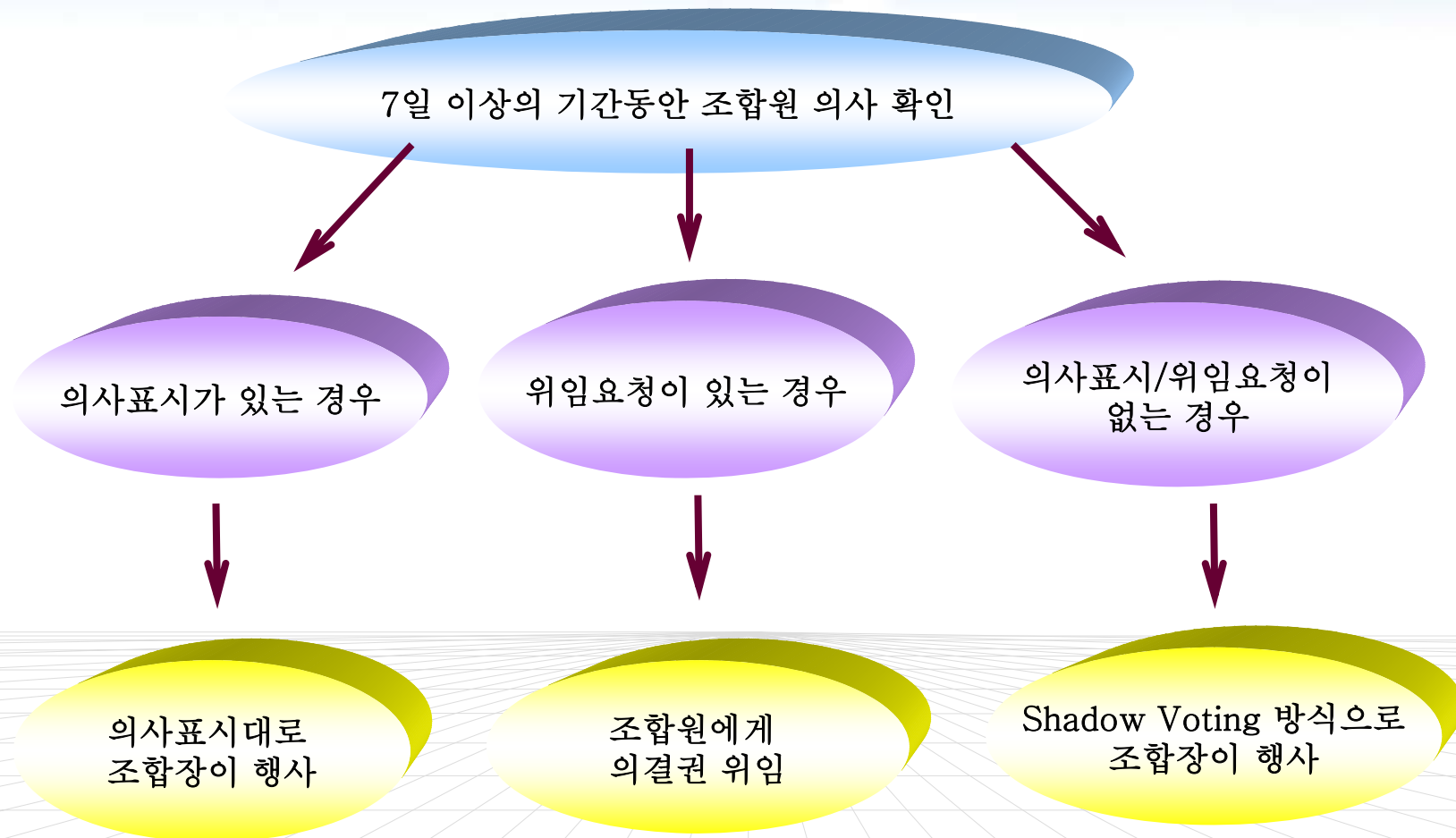
중도인출

- ❖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여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인출 가능

- ① 조합원의 퇴직
- ②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 ③ 상장폐지 확정 또는 상장폐지 신청
- ④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상 경과 (단, 관리종목 지정 후 취득 분 제외)



V. 의결권 행사 - 개인별계정



V. 의결권 행사 - 조합계정



□ 다음 3가지 방법 중 회사와 협의하여 규약에 정한 방법으로 조합장이 행사

- ❖ 개인별계정 주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는 조합원의 의사표시 비율과 동일한 비율대로 행사
- ❖ Shadow Voting 방법으로 행사
- ❖ 조합원 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사



VI. 조합 해산



□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음

- ❖ 당해 회사가 파산한 경우
 - ❖ 사업의 폐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을 위해 회사가 해산한 경우
 - ❖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 ❖ 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 동안 계속하여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조합해산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할 때 존속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로 부터 3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VII. 세제지원 - 조합원에 대한 지원1



출연금 소득공제

- ❖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자금을 당해 연도에 4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한 후,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과세이연)
 - ① 우리사주를 3년 미만 보유한 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 전액 근로소득 과세
 - ② 우리사주를 3년 이상~5년 미만 보유한 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의 50% 비과세
 - ③ 우리사주를 5년 이상 보유한 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의 75% 비과세

무상 취득주식 배정 시 비과세

- ❖ 조합원이 자사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배정받은 때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의무보유기간 경과 후 인출하는 때에 근로소득세 부과 (과세이연)
 - 회사출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개인별 과세이연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분은 개인별계정 배정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

※ 과세이연 한도 : Max(개인연봉의 20%, 500만원)



VII. 세제지원 - 조합원에 대한 지원2



배당소득 비과세

- ❖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된 주식으로서 액면가 기준 1,800만원 이하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비과세
 - 단,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과세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비과세

- ❖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증여세 비과세
 -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배정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일 주)

이 책의 손 우표로 드립니다. 210mm×297mm(천문용지) 54g/m²

(附 錄)

1. 동일 우회시루 조합원의 우회시루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 기재합니다.
2. ⑤의 취득주식액인거의 집계관에는 우회시루 취득일 현재 총 우회시루보유주식의 액인거의 집계액을 기재합니다.
3. ⑤의 날부채액관에는 기원한정수달로한 채액을 기재합니다
4. ⑤의 전입채액관에는 비과세인 경우에는 "0"을, 원한정수채의 전입본은 전입채액을 기재합니다.

명세서



[별지 제60호서식] (01.9.29. 개정)

(앞 쪽)

기 간	~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법인명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 우리사주 취득일	④배당금 지 급 결의일 · 결산일	⑤취득후 1년이 되는 날	⑥취득주식 액면가액 합 계	⑦ 배당소득	⑧ 납부세액	⑨ 환급세액



VII. 세제지원 - 조합원에 대한 지원3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 ❖ 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1년 이상 예탁한 경우로서 액면가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주식을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단, 양도차익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 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인정이자 비과세

- ❖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받은 경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함



VII. 세제지원 - 회사에 대한 지원



출연금 손비 인정

- ❖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및 금품은 전액 손비로 인정

인정이자 비과세

- ❖ 회사가 조합원에게 자사주 취득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한 경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조합운영비 지원액 손비인정

- ❖ 회사가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전액 복리후생비로 손비 인정



VII. 세제지원 - 기타



대주주 출연금 소득공제

- ❖ 대주주가 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전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소득공제

조합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 우리사주조합기금이나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



우리사주의 모든 것!
한국증권금융과 상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사주지원센터
Center for Employee Stock Ownership